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4년 3월 5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3월 6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안전체험관 내 수난체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조례에 반영하고, 안전체험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주민이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장’을 신설

나. 안전체험관의 설치·위치·운영시설 및 기능 등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안전체험센터의 개관·휴관, 이용료(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수난체험센터의 개관·휴관,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등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보험가입,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등(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세월호 사고, 오송지하차도 사고 등 도민의 수난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충북안전체험관에 건립 중인 수난체험센터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총 15개 조문으로 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현행 조례를 제1장에서 제4장으로 구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하고, 안전체험관을 안전체험센터와 수난체험센터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체험관 운영시설을 안전체험센터 및 수난체험센터로 규정함.
 - 안 제5조(기능)에 생존수영 및 수난안전체험 관련 사항 신설
 -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수난체험센터 운영시간,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4. 2. 2.~'24. 2. 22.)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 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제정안은 총 제4장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난체험센터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장으로 구분하여 안전체험관의 일반적인 사항과 안전체험센터, 수난체험센터에 대해 도민이 알기 쉽게 구성함.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도민의 수난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충북안전체험관에 건립 중인 수난체험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별표'에 따른 일반수영 이용료의 적절성 여부, 수난안전체험의 종류와 이용료의 적절성 여부 및 운영 계획, 생존수영교육 이용료 산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난체험센터 개관시기 및 운영 계획(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